



의안번호	제15호
------	------

<b>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출 자	논산시장
제출연월일	2018. 3. 6.

#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5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3. 6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어르신들만의 행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고자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
- 나.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모두가 건강하게 참여하는 안전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등 총칙(안 제1조 ~ 제5조)
- 나. 고령친화도시 조성(안 제6조 ~ 제20조)
-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 -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인식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참여, 협력
- 다.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(안 제21조 ~ 제24조)
- 도시계획, 교통, 의료, 노인복지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단 구성
- 라.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(안 제25조 ~ 제34조)
-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 수립 시행, 연구,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9조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기타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 반영 (자격기준에 대한 결격사유 미흡)
- 제27조(구성) 제3항에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미흡 재량규정의 구체성.객관성 부족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항 수정을 권고
  - 권고안 제27조(구성) 제3항 중 다만, 금품·향응 수수, 불법 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. 라고 내용 반영
- (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의견 반영 (여성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고려)
- 제3조(기본이념)제2항 중 여성노인인구의 증가를 감안한 정책적 배려가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의견
  - 의견안 제3조(기본이념)제2항 중 노인은 성별·사회경제적·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 라고 내용 반영
  - 제22조(구성)제1항 중 특정 성별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의견
  - 의견안 제22조(구성)제1항 중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라고 내용 반영
- (3) 규제영향평가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- (4) 입법예고 :
- (가) 예고기간 : 2018. 01. 08. ~ 2018. 01. 27.
  - (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
- (6) 충청남도소관실과 : 저출산고령화대책과

## 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#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논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령친화”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고령친화도시”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3. “고령사회 가이드라인”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.
4. “고령친화도”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.

**제3조(기본이념)**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, 노인은 성별·사회경제

적· 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**제4조(책무)** ①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.

② 논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**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##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

**제6조(계획 수립 등)** ① 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
3. 주요 정책과제
4. 연도별 추진계획
5. 추진사업 목록
6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7조(시행계획의 실시 등)**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.

**제8조(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)**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, 소속 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
**제9조(조사 및 연구)** 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(생활환경 편의증진)**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
2.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
3.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
4.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
5.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11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**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2.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3.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4.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
5.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2조(사회활동 참여의 장려)** 시장은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

2.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3.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

4. 그 밖에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)**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

2.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

3. 노인에 대한 존경,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

4.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

**제14조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고용촉진 및 직업안정)**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

2.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

3.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

4.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

**제16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** ① 시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31조에

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, 정보교환 및 견학,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17조(교육 및 홍보)**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전문인력의 배치)**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.

**제19조(추진실적의 평가)**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포상)** 시장은 경로·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

**제21조(설치)**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논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.

**제22조(구성)** 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시장은 도시계획, 교통, 의료,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**제23조(기능)**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·점검하고,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

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.

**제24조(실비보상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4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

**제25조(설치)**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26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
2.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,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
3.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27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친절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,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,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금품·향응 수수, 불법로비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

한다.

**제28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,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29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2.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**제30조(위원의 제척 등)**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**제31조(위원장의 임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2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·장소·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.

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 안 자	100세 행복과장	박 용 규
	동고동락팀장	이 은 정
	담 당 자	지 창 하 (746-5333)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17조(교육 및 홍보)
- 제33조(수당)

### 2. 비용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(강사료, 홍보물 등)
- 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등

#### 나. 추계결과

- 세 출 : **124,700**천원/5년
  - 연구용역비 : 50,000,000원 × 1년 = 50,000천원
  - 회의비 및 홍보물 등 : 10,000,000원 × 5년 = 50,000천원
  - 모니터단 운영비 등 : 2,000,000원 × 5년 = 10,000천원
  - 행사운영비 : 1,500,000원 × 5년 = 7,500천원
  - 국내여비 : 1,440,000원 × 5년 = 7,200천원

### 3. 작성자

100세행복과장 박 용 규

## 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구	분	1차 년도 (2018년)	2차 년도 (2019년)	3차 년도 (2020년)	4차 년도 (2021년)	5차 년도 (2022년)	계
세	입	14,940	14,940	14,940	14,940	64,940	124,700
	시비	14,940	14,940	14,940	14,940	64,940	124,700
세	출	14,940	14,940	14,940	14,940	64,940	124,700
	연구용역비					50,000	50,000
	회의비 및 홍보물 등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50,000
	모니터단운영비 등	2,000	2,000	2,000	2,000	2,000	10,000
	행사운영비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	국내여비	1,440	1,440	1,440	1,440	1,440	7,200
	재원조달	14,940	14,940	14,940	14,940	64,940	124,700
의	존 재 원						
자 체 수 입	소     계						
	지   방   세						
	지   방   채						
	기     금						
	공기업 특별회계						
	기     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## 참고 1

#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체)

#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

제23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#### □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# 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9조

제29조(조사 및 연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·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참고 2****전국 고령친화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**

- **서울시** :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2017. 9. 15
- **제주시** :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2017.08.09.
- **광역시 : 2개소**

구 분	조례명	제 · 개정일
부산	부산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조례	2016. 06. 08
인천	인천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조례	2017. 07. 17

- **기초 : 3개소**

구 분	조례명	제 · 개정일
경기 수원시	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	2017.09.27
경기 평택시	평택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	2017.11.09
충남 서산시	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	2017.06.02